
입 법 정 보

2016-8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 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식물신품종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6
2.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6
3.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7
4. 해양수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업부)	7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8
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9
7.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지(안) (보건복지부)	10
8.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10
9.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11
10. 전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3
11.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3
12.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4
13.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5
14.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7
1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7
1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8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18
18.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8
1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9
20.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9
2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21
2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2
2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3
2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4
2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업부)	25
26.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7
27.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27
28.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8
29.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28

3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29
3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31
3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1
3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2
34.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3
3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33
3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33
3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34
3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	35
39.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36
40.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6
41.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37
42.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7
4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7
44. 「대학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8
45.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8
46.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8
4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39
4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9
4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0
5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40
5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40
52.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41
53.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경찰청)	41
54.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42
5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42
56.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43
57.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43
5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44
5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44
6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5
61.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5
6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6
6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46
64.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47

65.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47
66. 「산지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산림청)	48
67. 「산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산림청)	48
68.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산림청)	48
6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산림청)	49
7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49
7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49
7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50
7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50
7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50
75.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52
76.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52
7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52
7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53
7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54
80.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54
8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55
8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55
83.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56
8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57
8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57
86. 「주거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59
87.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59
88.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60
8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60
9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61
9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63
9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63
9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64
9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65
95.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65
96. 상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66
9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67
9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67
9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68
10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부)-----	69
10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70
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자원부)-----	70
10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71
10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72
10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74
10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74
10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74
10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75
10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76
11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76
111.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76
11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77
113.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78
114.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78
11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78
11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79
117.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79
118. 「궤도운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80
11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80
12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81
12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82
12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환경부)-----	83
1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환경부)-----	83
12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84
125.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85
126.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86
127.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86
128.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87
129.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88

정부입법예고 (2016.03.25.~04.07.)

1. 식물신품중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6. 03. 25. • 마감일자 : 2016. 05. 04.
- 행정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 별칙적 용시 공무원 의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종자위원회와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3. 25. • 마감일자 : 2016. 05. 04.
-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신설. 항공교통훈련 통합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등 항공법('16.1.19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권자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항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수립 업무 등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공항개발사업 업무를 국토부장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2항제32호)
- 항공교육훈련 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63조제6항)
-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제·개정 신고의무 위반행위 및 항공교통사업자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64조, 별표7)

3.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3. 25. • 마감일자 : 2016. 05. 04.
-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신설. 항공교통훈련 통합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등 항공법('16.1.19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권자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신고서식을 신설(안 제278조의3, 별지 제107호의2 서식)
-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서류의 비치장소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안 제288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상담 등을 위한 국내 전화 연락처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88조의2)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3%에서 0.02%로 변경(안 별표 18)

4. 해양수산부위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03. 25. • 마감일자 : 2016. 04. 04.
- 해양수산부에 크루즈산업 육성 및 유라시아 경제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6급 1명), 연안안전시스템 구축 및 어항(漁港) 재개발 업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사이버보안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과학기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 5명(연구사 5명),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협약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 인력 2명(6급 2명), 항만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국립수

산과학원에 수산자원조사센터 및 육종전복센터 연구·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연구관 2명, 7급 2명, 연구사 1명), 해역이용영향평가 검토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원표에 증원된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3. 25.
- 마감일자 : 2016. 05. 04.

-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확대, 장애인 응시자 시험 편의제공 의무화, 등급 변동·상실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663호, 2015. 12. 29. 공포)됨에 따라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결과제출 방법 규정,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 기준 마련, 장애등급 변동·상실에 따른 제공 정보의 내용 및 방법 규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2호, 2015. 8. 11. 공포)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령에 규정된 장애인판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임 및 해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신청인의 불편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규격 단일화를 장애인 등록, 관련 증명서 및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신청인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규격에 적용하고자 함

-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결과제출 방법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 장애인 등록 또는 관련 증명서 및 자격증 발급(재발급) 등 신청시 제출하는 사진규격 변경(안 제3조, 제9조,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개정)
- 정밀심사 의뢰 공공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 장애등급이 변동·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의 대상·기준 및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 장애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기준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 기준 마련(안 제37조의2 신설)

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3. 25. • 마감일자 : 2016. 05. 04.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확대하는 내용과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시험 편의제공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663호, 2015. 12. 29. 공포)됨에 따라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시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을 정하고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의뢰기관과 정밀심사 의뢰기관의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에 대한 동의 주체인 보호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정밀심사 의뢰기관 및 보호자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비하의 의미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고, 장애인생산품 구매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비하의 의미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적절한 용어로 변경(안 제2조 개정)
-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의무 실시 대상 기관을 정하고,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내용을 규정(안 제16조 개정)
-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에 대한 동의 주체인 보호자의 범위 지정(안 제20조 개정)
-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의뢰기관 지정(안 제20조의2 신설)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시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을 정하고,

시험 편의 제공의 기준을 마련(안 제29조 신설)

- 장애인생산품 구매 관련 근거조문 삭제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별표 3 삭제)

7.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지(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3. 25. • 마감일자 : 2016. 05. 04.

-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02호, 2016.2.3., 폐지, 2016.8.4., 시행) 폐지에 따라 그 하위 규정인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폐지하려는 것임

8.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 예고일자 : 2016. 03. 25. • 마감일자 : 2016. 05. 04.

-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 13566호, 2015. 12. 15. 공포)되고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병역정보의 기록·관리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등의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3778호, 2016. 1. 19. 공포)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지요원 배정대상 공공단체로 신규 지정한 기관을 추가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정비(안 제46조의3 등)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법률 제12273호, 2016. 1. 1. 시행)에 따라 병역법령의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징·소집 입영 중 부상자의 치료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113조, 별지 제139호의2서식)
징·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치료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 병역 정보의 확인·증명 위임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115조의2)
병역 정보의 확인·출력·증명에 관한 사항을 법·영에 규정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조문을 법·영의 규정된 조문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 사회복지무요원 배정대상 공공단체 지정 변경(별표1)
사회복지무요원 배정대상 공공단체로 신규 지정한 기관을 추가 반영하고, 사회복지무요원 지원 대상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 공익상 필요한 인력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 주민번호 생년월일 대체 등 서식 정비(별지 제3호서식 등 14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의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서식 및 제도개선 사항 반영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9.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 예고일자 : 2016. 03. 25. ● 마감일자 : 2016. 0. 04.
-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 등의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어 이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별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예비역의 과도한 동원훈련 및 교육소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역 진급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에 대한 병력동원훈련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3566호 2015. 12. 15. 공포 2016. 6. 16. 시행, 법률 제13778호 2016. 1. 19. 공포 2016. 7. 20.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병역증의 전자카드 및 전자송달 근거를 마련하고,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선발시험 지원자에 대해서도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과 같이 현역병 입영기일연기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병역증의 전자카드 및 전자송달 근거 마련(안 제5조)
 - 1) 병역증 및 전역증을 전자카드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에 대하여 법령에 위임근거 없이 시행규칙에 전자카드 방식으로 발급하는 것에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었음.
 - 2) 이에, 병역증 및 전역증의 관련근거를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병역증 전자카드 교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정비(안 제20조 등)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법률 제12273호, 2016.1.1. 시행)에 따라 병역법령의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귀가자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안 제27조 등)
 -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재입영할 경우 종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공중보건 의사 등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안 제93조)
 - 병무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 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복무 실태조사·점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예비역 진급교육 이수자 등의 병력동원훈련 면제(안 제100조의2)
 - 예비역의 과도한 동원훈련 및 교육소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병력동원훈련을 면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면제대상, 면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 전환복무 지원자의 입영기일연기 허용(안 제129조)
 - 현재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은 현역병 입영기일연기가 가능한 반면,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를 지원한 사람은 입영기일 연기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환복무 선발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를 허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징·소집 입영 중 부상자의 치료비 지급(안 제153조)
징·소집되어 개별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치료비 신청절차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관리(안 제155조의4)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해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병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 병역정보의 기록·관리 및 확인·증명 등(안 제155조의5, 제155조의6)
병역의무자와 의무복무를 마친 자에 대한 병역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병역 정보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병역정보의 기록·관리 및 확인·증명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10.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03. 25. • 마감일자 : 2016. 05. 04.
-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전시산업발전협의회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시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3861호, 2016. 1.27 공포, 2016. 7.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전시산업발전협의회로 변경(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개정)
법률 개정으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가 전시산업발전협의회로 대체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된 심의회 명칭을 협의회로 변경할 필요
- 규제의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19조의2)
전시시설 건립계획 사전협의절차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2016년12월31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재검토하여 기한을 연장할 필요

11.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03. 25. • 마감일자 : 2016. 05. 04.

- 실제와 맞지 않는 명칭을 현실화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민원 서류의 발급비용을 전자정부법에 따라 면제하기 위하여 개정함
- 「광구도 대장」을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로 명칭 변경(제4조)
- 정보통신망 이용 민원서류 발급 비용 면제 (제10조)

12.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03. 25. • 마감일자 : 2016. 05. 04.
- 광업법이 개정(법률 제13730호, '16. 1. 6일 공포,' 16. 7. 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광업출원카드」를 「광업출원상황표」로 명칭 변경(제3조, 제30조, 별지 제2호 서식)
- 광업권 출원서류에서 삭제된 구역도 관련 규정 삭제(제9조 삭제)
- 광업권취소 등에 따른 손실보상절차 및 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관련규정 삭제(제19조)
- 전자정보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민원인에 대하여 관련서류의 직접제출 의무 부과 신설(제13조, 별지 제10호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 광업출원인의 명의승계 신고 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법 제10조제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의무 및 광업등록소장 확인사항에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신설하고,
 -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본증명서 등 행정정보에 대하여 개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이에 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토록 함
-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경매청구기간을 3개월로 명시(제19조)
- 광량 보고서 신규 도입에 따른 조문 정리(제8조제2항, 제20조의3, 제21조, 별지 제4호 서식)
 - 매장량 보고서가 광량보고서로 대체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광구도 삭제

- 탐사실적보고서와 광량보고서는 부속서류가 아닌 별개의 보고서로 제출되므로 별도 제출 서류로 명시함
- 채굴계획 인가시 광산의 실질적 운영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서에 광량을 명시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 이용 민원서류 발급 비용 면제 등(제30조)
- 광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개정에 맞춰 희토류의 종류 확대 명시 (별표)
 - 첨단 산업원료 희토류 현행 3가지에서 17가지로 하여 확대
 - * 세륨, 란타넘,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
- 법정민원사무 처리기간 재정비계획에 따른 기간단축과 서식변경 (별지 제15, 16, 17, 33, 36호 서식)
 - 굴진증구결정신청, 굴진증구출원서, 토지수용(사용)인정신청(광업용)(42일⇒40일)
 - 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35일⇒30일), 조광권설정인가(21일⇒20일)

13.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03. 25. • 마감일자 : 2016. 05. 04.
- 광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5.12.9일 국회를 통과함(공포/시행: '16.1.6/7.7일)에 따라 법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광업법 제3조(광물의 종류) 개정에 맞춰 희토류 종류 확대 명시하고,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에 운모 포함(제6조)
 - 첨단 산업원료 희토류 현행 3가지에서 17가지로 하여 확대
 - * 세륨, 란타넘,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
 - 광업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운모를 시행령으로 상향조정

- 광업권 출원서류에서 삭제된 구역도 관련 규정 정비(제10조)
- 현장조사 불응자에 대한 불이익 관련 규정 정비(제12조)
 - 위헌 요소 제거를 위하여 현장조사 불응자에 대한 불이익 조항을 법률로 상향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광업권취소 등에 따른 손실보상절차 및 방법 등 규정 정비(제30조)
 - 광업법 제34조제5항을 개정하여 손실보상에 대한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손실보상을 위한 광업권 평가 등에 관한 시행규칙의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입법
 - 기타 재산권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함
 - 감정평가주체와 관련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개정의견을 반영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통일
- 광업법 제40조의2 단서에서 예정하고 있는 굴진탐사 허가의 불가피한 사유를 명시(제36조)
 - 광업법 제40조의2 단서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에만 탐사권자에게 굴진탐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사유가 불명확하여 시행령에서 이를 명확히 함.
- 채굴에 대한 지도 점검 제도 개선(제40조)
 - 광업법 제45조 개정으로 채굴에 대한 지도 점검 제도가 임의적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2년 1회이상 점검 의무 삭제
 - 임의적 지도 점검 사유에 대해서 민원 발생 등을 예시적으로 열거
 - 지도 점검 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공무원증으로 명시함
- 갱내실측도 및 광업부 작성 주기 변경(제60조)
 - 매월 작성 갱내실측도와 광업부를 매분기 작성토록 변경함
- 신고서 등의 불수리 사유에 시행령 제20조제4항 위반 신고, 법 제40조 위반 신고를 추가함(제70조)
 - 광업권 설정 출원 없는 출원자 명의 변경 신고 및 탐사계획 신고 기간을 경과한 탐사계획 신고를 불수리하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투자실적에 추가함(별표2)
 -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생산지연 광업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환경영향 평가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함

14.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03. 25. • 마감일자 : 2016. 04. 04.

- 우정사업본부에 설치된 준법감시담당관에 대한 한시조직 근거를 규정하고, 우정사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적정 대응 등을 위해 우정사업본부 내 실단간 기능을 일부 조정하며, 우정사업본부 부속기관인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우정사업조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해 기록연구사(1명)를 증원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내 과단위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하부조직의 기능을 고려하여 하부조직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우정사업관련 시스템 개발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산직렬 일부를 복수직렬 정원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3. 25. • 마감일자 : 2016. 05. 04.

-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조종면허를 취소할 수 있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3754호, 2016.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할 수 있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정하고,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갱신 신청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세부절차 마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 신설)
- ‘조종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종류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종류를 정하여 그 위법성 정도 등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토록 개선

- 사업등록 유효기간 이후의 갱신절차 마련(안 제30조의3 신설)
 -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의 유효기간 종료일 5일전까지 관할 등록관청에 갱신 신청토록 함

1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3. 25. • 마감일자 : 2016. 05. 04.

- 면허시험이 전부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3754호, 2016.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면허시험이전부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한 사후적 정신질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유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조종면허증 갱신신청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3. 25. • 마감일자 : 2016. 05. 04.

-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 받은 위험물시설 외의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위험물안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18. 식품의약품안전처외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3. 25. • 마감일자 : 2016. 04. 04.

- 수입식품, 마약류, 추적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이버보안 전담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4명)을 증원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01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를 신설하여 식품안전정보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출연 연구사업 수행 및 바이오시밀러 허가심사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공공기록물 관리 및 식품 이력추적관리 전담 인력 3명(7급 1명, 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1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6. 03. 28. • 마감일자 : 2016. 05. 09.
-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급증에 따른 혼잡도를 완화하고 민원편의 향상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대폭 감경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사증(전자사증)의 신속한 발급을 위해 전자사증의 발급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온라인에 의한 각종 허가 신청 수수료 감경 (안 제74조 제2항)
온라인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재입국허가 신청 시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현재는 10분의 1을 감경)를 감경하도록 함
- 전자사증 발급 권한의 위임 범위 구체화 (안 제78조 제7항)
법무부장관의 사증발급 권한 중 전자사증 발급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20.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6. 03. 28.
- 마감일자 : 2016. 04. 07.

○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등 산림복지정책의 총괄 업무를 산림이용국에 추가하고, 산림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제고, 토석채취 사업장의 안전 확보, 사이버 보안 강화, 산림종자 및 정원 관련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본청 : 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소속기관 : 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고, 산림약용자원 연구, 목재제품 KS표준 연구,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및 시설물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력 7명(국립산림과학원 5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제13255호, 2015.3.27. 공포, 2016.3.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 산림병해충과를 산림병해충방제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제13255호, 2016.3.28.)됨에 따라 산림휴양치유과의 분장 사무를 조정(안 제7조제5항)

○ 신설

-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등 산림복지정책의 총괄·조정
- 산림복지이용권 운영, 산림복지전문업 육성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사항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지도·감독

○ 삭제

-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분장사무 조정(제9조제5항·제6항, 제10조제5항·제6항, 제11조 제3항·제4항)

- (산림이용국) 국민의 숲 지정·운영 : 산림휴양치유과 → 산림교육문화과
-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 연구 : 산림생물조사과 → 산림자원보존과
-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운영 : 재해방지교육과 → 교육기획과

- 다. 산림병해충과 명칭을 산림병해충방제과로 변경(제9조 제2항 및 제3항)
- 산림병해충과의 주요 기능이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이므로, 과 명칭이 주요기능 및 분장사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변경
- 라. ‘정원(庭園)의 조성 및 진흥’ 기능 강화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제9조 제3항, 제10조제7항)
-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분장사무 신설
 -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국가정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방·민간정원의 육성·지원
 - 국립수목원 전시교육과장 분장사무 신설
 - 정원연구 및 국가 정원정책 지원
- 마. 2016년 소요정원 반영 및 관리운영직군 전직 등 정원표 조정(제19조제1항,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8, 별표 9, 별표 10)
- 2015년 소요정원으로 확보한 기구 신설 및 인력 15명 증원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신설
 - 본청 6명, 국립수목원 2명, 국립산림과학원 5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명
 - 퇴직으로 결원된 관리운영직의 유사직렬 전환
 - (산림항공본부) 산림보호운영 9급 1명 → 임업 9급 1명
 -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관 간 정원 조정
 - (산림항공본부)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무운영서기보

2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6. 03. 28. • 마감일자 : 2016. 05. 09.
- 출입국심사장 혼잡에 따른 승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연령을 확대하고, 외국인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우수한 연구개발인력 유치를 위해 기업투자(D-8) 및 영주(F-5) 체류자격의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증발급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자비자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전자사증 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자동출입국심사(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 (안 제1조의2)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연령을 7세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증 발급 요건 삭제

(현행은 ①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 14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한 사람으로 규정)

또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위한 사전등록 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현행 14세 이상 17세 미만에서 7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 전자사증(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사증) 발급 권한의 위임 (안 제96조제1항) 법무부장관의 사증발급 권한의 일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전자비자센터에서 전자사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외국인 기술창업자에 대한 기업투자(D-8) 자격 취득요건 완화 (안 별표1) 국내대학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현재는 국·내외 학사 이상 학위 소지 필요)를 가진 외국인이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갖고 법인을 창업한 경우 기업투자(D-8)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영주(F-5) 자격 취득요건 완화 (안 별표1)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 근무하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3년간 국내에 체류(현재는 통상 5년간 국내 체류 필요)하면 영주(F-5)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2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3. 28. • 마감일자 : 2016. 05. 09.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체계 마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범위 확대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674호, 2015. 12. 29. 공포)됨에 따라 입주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등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입주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입주승인 신청서 서식
시·도지사가 입주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고, 전체 혁신도시에서 통일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지양식으로 입주승인 신청서 서식 규정
- 부지 등 양도신고서 서식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부지 등 양도신고서 서식도 표준화하여 별지에 규정

2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3. 28. • 마감일자 : 2016. 05. 09.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5.12.29 공포)에 따라 입주승인기준, 방법, 절차 등 개정법안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 입주승인기준, 절차 등의 마련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입주승인기준에 포함할 내용, 입주승인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마련
- 양도신고 구비서류 및 양도가격의 산정방식 마련
클러스터 입주에 적합한 제3자에 부지, 시설, 건축물을 양도할 수 있도록 양도사유서 등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투기세력 방지를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양도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양도가격 산출 시 고려하여야 할 비용을 규정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지역 확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범위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도로 하되, 일부 지역에서는 2개 이상 시·도를

묶어 권역화 함

-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할 사항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 유치, 지역인재의 채용 등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를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재량을 부여

2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3. 28. • 마감일자 : 2016. 05. 09.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5.12.29 공포)에 따라 입주승인기준, 방법, 절차 등 개정법안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 입주승인기준, 절차 등의 마련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입주승인기준에 포함할 내용, 입주승인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마련
- 양도신고 구비서류 및 양도가격의 산정방식 마련
클러스터 입주에 적합한 제3자에 부지, 시설, 건축물을 양도할 수 있도록 양도사유서 등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투기세력 방지를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양도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양도가격 산출 시 고려하여야 할 비용을 규정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지역 확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범위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도로 하되, 일부 지역에서는 2개 이상 시·도를 묶어 권역화 함
-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할 사항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 유치, 지역인재의 채용 등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를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시 도지사에게 재량을 부여

2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양수신부)

• 예고일자 : 2016. 03. 28. • 마감일자 : 2016. 05. 09.

-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예방과 테러 방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법이 적용되는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제항해여행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제도 개선 및 법체계를 정비함은 물론 보안검색의 품질 제고와 경비보안 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경비·보안검색 업무 위탁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적용범위를 명확화(안 제3조제1항)
 - 1)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선박“이라 한다)’를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으로 약칭을 삭제하고, 항만시설의 적용범위를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
 - 2) ‘국제항해선박’은 제2조(정의)제1호에서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으로 정의하여 선박의 국적과 관계없이 항행구역을 나타내는 용어이나, 제3조(적용범위)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을 ‘국제항해선박’으로 약칭하여 적용범위 대한 법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항만시설의 적용범위도 국제협약의 보안기준에 따라 외국 국적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도 포함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3)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SOLAS)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해상보안 기준(ISPS Code)을 반영하여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 보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기대됨

-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제도 및 법체계 정비(제22조 삭제, 안 제31조의2 신설)
 - 1) 제2장(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에서 제22조(국제항해여객선의 보안검색 등)를 삭제하고, 제3장(항만시설의 보안을 위한 조치)에 제31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를 신설
 - 2) 국제여객터미널 시설을 이용하는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은 항만시설소유자가 실시하는 항만시설보안 업무이나 선박보안과 관련된 제2장에 기술되어 법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음
 - 3) 보안주체가 서로 다른 선박보안과 항만시설보안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적용대상 선박을 명확히 하여 법해석상 혼란 방지효과 기대
- 경비·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제도 도입(안 제31조의3 신설)
 - 1) 경비·보안검색 업무를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 중 항만시설소유자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2) 항만시설보안 분야 경비인력의 약 52%를 민간 경비업체의 특수경비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업체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높은 이직률에 따른 전문성 저하 및 보안공백 우려
 - 3) 항공보안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비·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제도를 항만보안 분야에 도입하여 체계적인 경비·보안검색 업무 수행 및 특수경비원의 전문성 강화 기대
- 부정한 방법 등으로 경비·보안검색 업무 위탁업체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48조제5호)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보안검색 업무 위탁업체로 지정받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2) 경비·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제도 도입에 따라 부정한 방법 등으로 경비·보안검색 위탁업체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벌칙 신설
 - 3) 경비·보안검색 업무 위탁업체 품질 확보를 통해 국가보안시설인 항만시설의 보안 강화 효과 기대

26.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3. 28. • 마감일자 : 2016. 05. 09.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 등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만성질환 장기추적조사 실시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동 조사를 시행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만성질환 장기추적 조사 근거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법 제41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만성질환 장기추적조사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규정 신설 (안 제15조 신설)
만성질환 장기추적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27.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 예고일자 : 2016. 03. 28. • 마감일자 : 2016. 04. 07.
- 사이버 보안과 정밀 농기계 보급 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인력 3명(6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증원하고, 기후변화 대응, 한국형 스마트 팜 및 식용 곤충 연구를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인력 6명(연구관 3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며, 쌀 수출단지 조성 및 가공 연구를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에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국립축산과학원에 가금연구소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 연구사 1)을 증원하며, 약용작물 연구 강화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인력 1명(6급 1명)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

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 중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한시조직으로 저장유통과를 신설하며, 스마트 팜 연구 강화를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생산자동화기계과를 스마트팜개발과로 개편하고,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8.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6. 03. 28. • 마감일자 : 2016. 04. 18.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하여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진·출입로, 지하매설물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 경비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운영상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기간 연장(안 제31조제5항제1호가목 개정, 제4호 신설)
 - 1)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진·출입로, 지하매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기간을 현행 3년(토지)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기간을 현행 3년(토지) 또는 5년(수면), 3년(용수)에서 각각 10년으로 연장함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경비 감면(안 제32조제1항제1호 개정)
 - 1)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를 현행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하함

29.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6. 03. 28. • 마감일자 : 2016. 04. 18.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하여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진·출입로, 지하매설물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 경비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운영상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기간 연장(안 제31조제5항제1호가목 개정, 제4호 신설)
 - 1)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진·출입로, 지하매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기간을 현행 3년(토지)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기간을 현행 3년(토지) 또는 5년(수면), 3년(용수)에서 각각 10년으로 연장함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경비 감면(안 제32조제1항제1호 개정)
 - 1)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를 현행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하함

3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인)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6. 03. 29. • 마감일자 : 2016. 05. 09.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함)가 휴지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경우 시설 이용자의 권익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4062호, 2016.3.2. 공포, 2016.9.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담소등을 폐지하려는 자가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곳의 방문으로 폐지신고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별지서식 중 성매매피해자 상담기록카드 및 입소자 이용자 카드 삭제(안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 성매매피해자의 연령, 피해 상황, 서비스 욕구 및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원내용 등에 따라 상담내용 등이 다양화 차별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법령에서 지침으로 이관
- 상담소등 휴지 폐지 또는 폐쇄 시 시설 입소 이용자의 권익보호조치를 위한 세부내용 규정(안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제3항)
 - 상담소등 휴지 또는 폐지 시, 상담소등의 장은 시설 입소 이용자에 대한 전원조치 또는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조치 등을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담소등의 장이 시설 입소 이용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신고서를 수리함
 - 상담소등 폐쇄 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설 입소 이용자가 전원 또는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함
- 상담소등 폐지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22조제4항 및 제5항)
 - 상담소등을 폐지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관청은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함
 - 관할 세무서장이 받은 폐지신고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 해당 관청에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봄
- 상담원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 이수시간 조정 및 축소(안 별표2)
 - 상담소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의 교육과목 조정에 따른 이수시간을 조정하고 성폭력 가정폭력등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양성과정 교육시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시간을 현행 5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축소함
- 기타 자구 수정(안 별표4)
 - 법령 조문에 규정된 용어로 수정, 관련 서류를 분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위치 및 입소 이용자 관계 서류를 법령상의 서류로 명기

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

3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6. 03. 29. • 마감일자 : 2016. 04. 08.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201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난민과를 신설하여 난민인정 심사 및 난민인정의 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김해지역의 외국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출입국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김해출장소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에 감찰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교정시설 내에 혈액투석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의료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수용자에 대한 식품위생 제고 및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한시조직으로 신설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그 소속 김해출장소의 관할구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와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각각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와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3. 29. • 마감일자 : 2016. 05. 09.

○ 시·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개정(법률 제 19884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입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가 기초지자체장으로 위임하는 권한 범위 규정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조명기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조사하고,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 등에게 개선하도록 명령하는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3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3. 29. • 마감일자 : 2016. 05. 09.

- 국민의 안전과 환경상의 위해를 사전 방지하기위해 수입 금지할 수 있는 지역 및 유해물질을 규정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법률 제13887호, 2016. 1. 27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수입금지 물질의 포함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의무화(안 제9조 제1항제11호 신설)

폐기물 수입업자가 폐기물 수입 허가신청 시 폐기물수입허가신청서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의 유해물질정보자료를 제출토록 함

- 원자력 사고 발생 지역 등의 폐기물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안 제18조제1항 개정)

폐기물 수출국에서 원자력 사고 등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 지역의 폐기물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기위해 대상 품목 지역 방법 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폐기물 수입 제한 금지 물질 및 함량기준 규정(안 제18조제2항 개정)

「폐기물관리법」상의 재활용 유형에 맞지 않게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금지·제한되는 폐기물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제한물질을 기준이상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의 경우는 수입을 금지하도록 함

34.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3. 29. • 마감일자 : 2016. 04. 08.
-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공공 기록물 관리강화를 위하여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기록관리전문요원 3명(연구사 3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6. . . 공포·시행)되고, 국립생물자원관에 생물유전자원 정보관리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 예고일자 : 2016. 03. 29. • 마감일자 : 2016. 05. 09.
- 신용보증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간 재보증방식을 포괄약정방식에서 개별약정방식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법률 제13745호, 2016. 1. 6 공포)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재보증 제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보증유형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비율을 차등화(안 제24조의4 단서)
- 법에서 위임한 개별약정방식으로 재보증계약을 할 수 있는 보증유형을 신설(안 제24조의5제3항)

3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3. 29. • 마감일자 : 2016. 05. 09.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업체에 대

하여 자가품질검사제도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4022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식품보존업 등의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청소년이 신분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등 강박으로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 행정처분 경감을 확대하여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을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자에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대상을 지정 고시되지 않는 식품첨가물로개선함(안 제5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HACCP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면제함(안 제31조의2 신설)
-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변조 및 도용하거나 협박, 폭행 등에 의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 경감(안 별표 23 I. 일반기준 제15호 차목 신설)
-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 표창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6조의2 신설)

3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3. 29. • 마감일자 : 2016. 05. 09.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규정하고, 유전자변형식품과 안전성 심사로 용어가 변경하며, 공무원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영업소를 출입하여 식품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조사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며, 과징금 처분 상향조정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 시 과태료 처분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4022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규정 (안 제6조제2항, 제23조제2호, 제25조제1항, 제26조제9호, 제26조의2, 제28조)
- 유전자변형식품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안전성 평가를 안전성 심사로 각각 용어 변경 (안 제9조, 제10조)
- 공무원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영업소를 출입하여 식품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조사기관,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영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함(안 제13조의2, 제18조, 제49조의3, 제50조의2, 제50조의4, 제52조의2)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제67조 관련 별표 2)

3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03. 30. ● 마감일자 : 2016. 05. 09.
- 오르내림이 심한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을 고려할 때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한 전기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큼.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의 정의에 포함하여 별도의 면허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한 자전거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전거(이하 “전기자전거”라 한다)는 자전거로 봄 (안 제2조제1호 단서 신설)
 - 1)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일 것
 - 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기 동력이 보조되지 않을 것
 - 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어린이(13세 미만)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 (안 제22조의2 신설)

39.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 예고일자 : 2016. 03. 30. • 마감일자 : 2016. 04. 04.
- 통계청의 인력 6명(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여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강화 및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체계 개선 등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과 통계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통계개발원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경인지방통계청 인력 1명(5급 1명), 충청지방통계청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여 환경통계 연구기능 강화와 지역통계 홍보·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내용 등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40.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3. 30. • 마감일자 : 2016. 05. 09.
- 고졸 취업자 등 성인학습자가 어려움 없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 학업부담을 줄여주고,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 공동·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외국대학 소속 유학생의 경우 국내대학의 졸업필요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국내에서 추가로 취득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해서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졸업학점 인정 요건을 4분의 3으로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임
- 고졸 선취업자 등 성인학습자가 시간적 어려움 없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수업일수를 학기당 4주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 개정
- 동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호의 과정(공동·복수학위과정 등) 중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에 학점 인정 범위의 상한선을 졸업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3 이내’로 정하는 단서 신설

41.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6. 03. 30. • 마감일자 : 2016. 04. 11.
- 성인지 교육, 취약계층 여성 자립·자활 지원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증원 등의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한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42.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인)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3. 30. • 마감일자 : 2016. 05. 09.
- 고등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심사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운영하는 한편, 기 인가된 교사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기 인가된 교사의 위치를 일부 또는 전부 변경하는 교사의 위치변경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함(안 제4조제1항 개정)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대신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 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개정)

4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 예고일자 : 2016. 03. 30. • 마감일자 : 2016. 05. 09.
- 고등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심사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사위원회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함

-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대신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단서 신설)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개정)

44.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3. 30. • 마감일자 : 2016. 05. 09.
- 고등교육기관의 유형마다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심의내용이 유사하여 위원회 운영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위원인력 비효율 초래
- 국내대학이 분교 외 캠퍼스(위치변경인가) 등의 다양한 형태로 해외 진출시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한 제한요인으로 작용
- 각각 운영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흡수 통합·운영(안 제3조제2항 개정)
-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국외로 위치변경도 가능하도록 규정 일부 신설(안 제3조제1항 개정)

45.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3. 30. • 마감일자 : 2016. 04. 06.
-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는 목포대 사무국장직위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것임

46. 교육부외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3. 30. • 마감일자 : 2016. 04. 06.
- 교육부에 두는 개방형 직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안전정보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한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의 5급 정원 159명을 160명으로, 6급 정원 129명을 130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국사편찬위원회의 5급 정원 3명을 2명으로, 6급 정원 9명을 10명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4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6. 03. 30. • 마감일자 : 2016. 05. 09.
- 뇌물죄 등에 있어서 행정기관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의제규정을 관련 법률에 명시 하도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2015. 8. 11. 법률 제13462호)이 '16. 8. 11. 시행됨에 따라 소관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대한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소속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의제조항 신설(안 제24조 제5항)
「형법」상 뇌물죄 관련 규정인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위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봄

4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3. 30. • 마감일자 : 2016. 05. 10.
- 시장·군수·구청장이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조명기구 소유자 등을 발견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9884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시행규칙에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조례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법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삭제(제6조 제2항 삭제)
- 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 내용 및 절차규정 마련(안 제7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이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 등을 발견했을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4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3. 30. • 마감일자 : 2016. 05. 0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05호, 2016. 2. 3. 개정, 2016.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인용 법령 조문 정비(안 별표 3)
별표 3 제2호 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1조제3항” 을 “법 제11조제4항” 으로 함

5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3. 30. • 마감일자 : 2016. 05. 0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05호, 2016. 2. 3. 개정, 2016.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실태조사의 내용 및 절차 등(안 제4조)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 및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하고, 조사대상 선정, 조사기간 설정 등 실태조사의 절차를 정함

51. 고용노동부위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6. 03. 30. • 마감일자 : 2016. 04. 06.

- 고용노동부에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1명(6급)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화학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적재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도감독 인력 6명(6급)을 증원하는 한편, 성과평가제 적용대상 한시기구에 두는 정원표를 하나로 표기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52.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6. 03. 30. • 마감일자 : 2016. 05. 09.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자에 대하여 전국기능경기대회 재 참가를 금지하고 있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16.7.1. 부터 효력 상실)에 따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재 참가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재 참가 범위 확대(안 제27조 제1항, 제2항)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1위와 2위 입상자에 한해 국내 기능경기대회 재 참가를 제한하고, 3위 이하 입상자에 대해서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당시 참가 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국내 기능경기대회 재 참가를 전면 허용함

53.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경찰청)

- 예고일자 : 2016. 03. 30. • 마감일자 : 2016. 05. 09.
-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등 범인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근거 규정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신설(법률 제13825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보상 대상,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보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54.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경찰청)

- 예고일자 : 2016. 03. 31. • 마감일자 : 2016. 05. 10.
- 경기활성화 등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으로 인하여 민간영역 뿐 아니라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분야로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법률 제13813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통고처분 이외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 자치경찰이 단속한 위반자가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거나 통고처분 받고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경찰에 인계할 수밖에 없는 업무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3637호)과 「경범죄 처벌법」(법률 제13813호)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을 납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즉결심판 청구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안제6조)

5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6. 03. 31. • 마감일자 : 2016. 05. 10.
-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휴지 신고 또는 인가 취소 등의 경우에 시설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4058호, 2016. 3.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그 조치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56.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6. 03. 31. • 마감일자 : 2016. 05. 10.
- 화재 위험이 높은 다중 이용 시설인 실내 권총사격장의 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실내 권총사격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허가신청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15.11.19 시행)됨에 따라 그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실내 권총사격장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완성검사 신청 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하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57.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6. 03. 31. • 마감일자 : 2016. 05. 10.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제8조제7호가 같은 조 제9호로 변경됨에 따라, 동 호를 인용하는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사격장에서 총기나 석궁 대여·회수시 대여대장 기록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이 매우 낮아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상향하려는 것임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호가 동조 제9호로 변경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중 “법 제8조제7호에 따라” 를 “법 제8조제9호에 따라” 로 개정(안 제7조제1항)
- 사격장에서 총기·석궁의 대여·회수기록 의무 위반자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함(안 별표 16)

5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6. 03. 31. • 마감일자 : 2016. 05. 10.
- 집회 및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철회신고서와 과태료 부과 고지서 양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철회 신고서 양식을 신설함(안 제9조,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과태료 수납부 양식 등을 신설함(안 제10조,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5호서식까지 신설)

5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6. 03. 31. • 마감일자 : 2016. 05. 10.
- 집회 및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과 납부절차, 가·감경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통고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먼저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금지통고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통고

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먼저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금지통고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 (안 제7조의2 신설)

-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과 납부 기한 등을 신설함 (안 제20조, 별표 3 신설)
- 과태료 업무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의 수집 근거를 신설함(안 제21조 신설)

6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3. 31. • 마감일자 : 2016. 05. 10.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법률 제13789호, 2016. 1. 19. 공포, 2016. 7. 20. 시행)에 따라 법률로 규정된 도시개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중립성 제고를 위해 도시개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함 (안 제44조의2 삭제)
-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현지 여건과 특성을 적기에 반영하여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집행적 업무를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함 (안 제50조제1항 신설)

61.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3. 31. • 마감일자 : 2016. 05. 10.
-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및 민간도로관리자가 고용 또는 위탁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운행제한 위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3791호, '16.1.19 개정, '16.7.2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임무(안 제40조의2 신설)

6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3. 31. • 마감일자 : 2016. 04. 11.
- 2016년 소요정원에 따른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인력증원(6급1, 7급2, 연구사1)을 반영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 개정 예정임에 따라 관련 인력의 직급별 직렬을 정하고 정원을 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과장급 개방형 직위 대상 변경(제37조제2항)
 - (해제) 보건산업진흥과장
 - (추가) 보건복지콜센터장, 위기소통담당관(질병관리본부)
- 2016년 소요정원 반영 인력증원 +4명(별표2, 별표9)
 - 본부 +2명(6급1, 7급1) : 사이버 보안 인력 강화
 - 국립재활원 +2명(7급1, 연구사1) : 재활분야 인력 강화

6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03. 31. • 마감일자 : 2016. 5. 10.
- ‘16. 1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안전관리자의 대리근무자 지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 하려는 것임
- 안전관리자 공백시 ‘직무대리자 대행기간’ 규정[안 제16조제4항]
 -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행기간을 명확히 설정
- 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안 제16조제5항]
 - 안전관리자책임자의 직무대행은 안전관리원이 하되, 안전관리원 미선임 시설의 경우에는 고시에 서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64.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6. 03. 31. • 마감일자 : 2016. 05. 10.
-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경비원을 신입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채용 전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및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면제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면제대상을 특수경비원을 포함한 경비원 신입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개정(안 제18조제2항제1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근거 및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면제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근거조항 개정(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65.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6. 03. 31. • 마감일자 : 2016. 05. 10.
- 제주자치경찰은 통고처분 이외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 자치경찰이 단속한 위반자가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거나 통고처분 받고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경찰에 인계할 수밖에 없는 업무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3637호)과 「경범죄 처벌법」(법률 제13813호)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66.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6. 04. 01. • 마감일자 : 2016. 04. 21.
- 정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연장,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방법 개선, 궤도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요건을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안 제18조의4)
 -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생략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신용카드 납부 허용(안 제24조의2)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 허용
- 궤도시설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요건 완화(안 별표3의2)
 -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의 민간사업자의 단독 설치를 허용

67.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6. 04. 01. • 마감일자 : 2016. 05. 11.
-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산림보호법 시행령」의 산림보호구역내 허용행위 확대 및 숲길조성 폭을 조정하며, 굴·채취가 가능한 임산물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자 함

68.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6. 04. 01. • 마감일자 : 2016. 05. 11.
-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표고 기준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6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6. 04. 01. • 마감일자 : 2016. 05. 11.
-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공익시설의 범위에 숲속야영장을 추가하며, 요존국유림 사용허가의 범위에 숲속야영장을 추가하고자 함

7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6. 04. 01. • 마감일자 : 2016. 05. 11.
-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임의로 입목벌채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7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6. 04. 01. • 마감일자 : 2016. 05. 11.
-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벌채지 등의 조림의무 완화, 사방사업 감리대상 조정,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해제요건에 풍력발전시설 포함, 숲길조성 등 산림사업 법인 구성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7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6. 04. 01. • 마감일자 : 2016. 05. 11.
- 재향군인회 회장의 전횡 및 독선적 회 운영과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재향군인회 회장을 포함한 임원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재향군인회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제도” 도입(안 제18조)
재향군인회 회장 등 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 횡령 등 재향군인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7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04. 01. • 마감일자 : 2016. 05. 02.
- 지급수단이나 증권을 수출입을 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위반금액과 관계없이 벌칙을 부과하였으나, 위반금액이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외국환거래법 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는 위반금액 등을 규정함

74. 「국토교통부위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4. 01. • 마감일자 : 2016. 04. 11.
- 국토교통부에 지반침하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해외철도수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도시재생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지역개발사업 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

원하고,

- 지방국토관리청에 지역개발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 지방항공청에 기록물 관리 및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1명, 연구사 2명), 홍수통제소에 강우레이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 2016. . .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원표에 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투자심사담당관·친수공간과 및 항공자격과를 각각 폐지하고, 각 과별 인력을 기능중심으로 개편하며, 재정담당관과 투자심사담당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예산의 편성·결산 및 지출 등 업무를 재정담당관으로 일원화하고, 주택도시기금 중 도시계정 운영 및 U-City·t도시개발 등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도시경제과를 신설하며, 노후산단 재생업무와 도시개발 사업간 연계성을 위하여 산업입지정책과 소관업무인 산업단지 재생업무를 도시경제과로 이관하고,
- 건축정책과와 부동산산업과로 분산되어 있던 건축물 분양제도와 부동산개발업 관련 업무를 신도시택지개발과로 일원화하며, 친수구역 업무와 하천계획 업무의 연계 강화를 위해 친수구역 업무를 하천계획과로 이관하는 등 수자원정책국내 업무를 조정하며, 첨단자동차 보급 확대 및 안전기술 개발 등을 위해 첨단자동차기술과를 신설함에 따라 자동차관리관내 업무를 조정하고,
- 차세대 항공기 기술개발과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등 정책 강화를 위해 첨단항공과를 신설하며, 항공기 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운항정책과 소관업무인 항공기 운항 및 위험물관련 업무를 운항안전과로 이관하고, 항공자격과 폐지에 따라 항공사 노조 업무는 항행안전팀으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항공인력 양성 관련 업무는 운항정책과로, 조종사 운항자격심사 관련 업무는 운항안전과로 각각 이관하며, 운항안전과 소관업무인 감항분야 항공안전감독 업무를 항공기술과로 이관하는 등 항공실내 업무를 조정하고,
- 기능개편에 따라 신도시 택지개발과·자동차운영과·운항정책과 및

운항안전과를 각각 부동산개발정책과·자동차운영보험과·항공안전정책과 및 항공운항과로 변경하는 등 일부 하부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체수자원 개발 및 수자원분야 해외진출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수자원산업팀)과 민자철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민자철도팀)을 각각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75.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외교부)

- 예고일자 : 2016. 04. 01. • 마감일자 : 2016. 05. 11.
- 「해외이주알선사업자의 알선료 및 수수료의 제정 또는 변경 시 외교부장관 앞 사전신고 의무가 삭제된 해외이주법(법률제13629호)이 2015.12.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관련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 시행코자 함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1조 행정처분의 사유가 되는 별표 항목 중 해외이주알선사업자의 일선료 및 수수료 신고 해태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별표 7 삭제

76.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4. 01. • 마감일자 : 2016. 05. 11.
- 차량 총중량 2톤 이상의 오프로드형 승용자동차에 완화하여 적용하던 가속주행소음기준을 국제표준기준(UNECE, 유엔 유럽경제위원회)에 따라 오프로드형 화물자동차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것임

7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4. 01. • 마감일자 : 2016. 05. 11.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528호, '15.12.1 공포, '16.6.2 시행)됨에 따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종류를 정하고, 냉매에 대한 효

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냉매 제조·수입자에게 판매량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 13874호, '16.1.27 공포, '16.7.28 시행)됨에 따라 냉매 판매량의 신고절차·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제출서류 중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7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4. 01. • 마감일자 : 2016. 05. 11.
- 대기환경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를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874호, '16.1.27 공포, '16.7.28 시행)됨에 따라,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자금 보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전산처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의 2 신설)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관측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위성 개발,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수집·생산, 분석 및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보조금대상 저공해차량의 전산처리대상 범위 확대(안 제62조의2)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자금 보조업무를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전산처리대상 저공해자동차의 범위를 현행 하이브리드자동차 외에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7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4. 01. • 마감일자 : 2016. 05. 11.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의 개정(법률 제14010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자발적인 기탁 금품을 접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을 정함
-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요구가 폐지됨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절차 규정을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로 개정함(시행령안 제7조)
-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요구가 폐지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가 불필요하여 재검토 규정을 삭제함(시행령 제13조의 3 삭제)

80.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04. 01. • 마감일자 : 2016. 04. 01.
-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제주지방우정청에 공공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기록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소속기관인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기관의 수행업무를 고려하여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대민 편익을 고려한 우체국 운영 및 우정사업 운영에 따른 주요 이슈에 적정 대응 등을 위해 본부내 하부조직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 · 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본부 하부조직별 기능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우정사업관련 시스템 개발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산직렬 일부를 복수직렬 정원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8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6. 04. 01. • 마감일자 : 2016. 05. 11.
- 소형견인차면허 도입, 보복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3829호 ' 16. 1. 27. 공포, ' 16. 7.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형견인차면허 신설에 따른 운전면허의 종류, 시험코스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소형견인차 면허 신설 및 특수면허의 용어변경에 따라 시행규칙을 정비함(안 제70조제1항제4호·제5호·제5의2호, 제103조제4항제3호, 제109조제3항제1호다목, 별표 18, 별표 23, 별표 24, 별표32, 별지 제42호 서식, 별지 제50호 서식, 별지 제54호 서식, 별지 제93호 서식, 별지 제105호 서식, 별지제117호 서식, 별지 제118호 서식, 별지 제144호의3 서식, 별지 제144호의4 서식).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 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100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8)
- 운전면허 응시원서 유의사항 란에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자 시험무효 및 응시제한 문구를 추가함(안 제42호 서식, 제42호의2 서식)

8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04. 01. • 마감일자 : 2016. 05. 11.
- 과거에 참여를 제한받은 자가 다시 동일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에서 참여를 받을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339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중견기업도 우선 고려대상으로 추

가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동일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받는 경우 참여제한 부과 기준 마련 (안 제27조, 별표 4의2 신설)
연구개발 내용의 누설·유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사유로 과거에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동일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제한을 받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참여제한 부과기간을 확대하고,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중 하나라도 이미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10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시 참여제한을 받더라도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연구개발성과 우선 실시고려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안 제21조)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우선 실시고려대상으로 확대함

83.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6. 04. 01. • 마감일자 : 2016. 05. 11.
- 긴급자동차 대상 자동차의 운전자가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 및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3829호 ' 16. 1. 27 공포, ' 16. 7. 28 시행)됨에 따라 범죄 및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방차·경찰용 자동차가 화재·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훈련하거나 그 밖에 긴급자동차 대상 자동차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경광등·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 제1종특수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 소형견인차면허 및 구난차면허로

- 구분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안 제64조, 제67조, 별표 5)
- ‘과태료·범칙금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과태료·범칙금의 전국적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 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89조의2 신설).
-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 수수료 등을 현행 교통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규정을 준용함(안 제97조의2 신설).
-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 외 경광등·사이렌 사용 시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등을 부과하도록 함(안 별표 8)
- 사업용 승합자동차 운전자가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범칙금 2만원 부과하도록 함(안 별표 8)

8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6. 04. 01. • 마감일자 : 2016. 05. 11.
-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시험용 게임물)별표 1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준 중 온라인게임 및 아케이드게임의 시험실시 허용기준을 완화하여 완성도 높은 게임물의 제작·개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임
- 온라인게임 등의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준 완화(안 별표1 1호가목, 나목) 시험실시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시험참여인원은 1만명 이내에서 2만명 이내로 확대함
- 아케이드게임의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준 완화(안 별표1 2호가목, 나목) 시험실시기간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시험 제공 게임기는 10대 이내에서 20대 이내로 확대함

8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4. 11. • 마감일자 : 2016. 06. 23.
-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86호, 2015. 8. 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창유리·안전삼각대·후부안전판 등 부품자기인증 항목 확대를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588호, 2015.10.13. 공포, 2016.7.1. 시행)됨에 따라, 확대된 부품자기인증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며, 국내 제작사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고, 차로 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

- 안전기준 국제기준 조화(안 제13조,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안 제57조, 안 제64조 및 안 제84조) 자동차의 조종장치, 도난방지장치, 승차장치, 운전자 좌석, 입석, 승강구, 비상구, 통로, 소화설비와 이륜자동차의 주행장치 및 후사경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보완함
-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안 제14조의2, 안 제15조의3, 안 제89조의2 및 안 제90조의3 신설)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 스스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상용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함
-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 안전기준 마련(안 제18조의4 신설)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화재사고가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그 구조, 기능 및 경고표시 등 안전기준을 마련함
- 부품자기인증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안 제112조의7부터 제112조의13까지 신설)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및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이 부품자기인증 대상 항목에 포함됨

- 에 따라 제도시행에 필요한 해당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 함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특례적용(안 별표 6의2)
 자율주행자동차가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에는 조향장치 기준 중 자동명령조향기능의 기준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자 함

86.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4. 04. • 마감일자 : 2016. 05. 16.
- 주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보이도록 관련 법률(주거기본법 제20조제5항)이 개정('16.1.19)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 주거실태조사 시 대상자에게 제시해야 할 구체적 서류를 규정해야 할 필요
-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는 서류에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제5항 신설)

87.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4. 04. • 마감일자 : 2016. 05. 16.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인력, 시설, 운영기준 등을 정하고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기준 (안 제1조의3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인력, 시설, 운영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 감염관리실 설치 확대(안 제43조제1항)
 -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로 확대함

88.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4. 04. • 마감일자 : 2016. 05. 16.
-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미리 정관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정의료법의 시행을 위하여 정관 변경 허가 시의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정관 변경 허가 절차(안 제15조의2제1항·제2항·제3항)
 -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의료기관의 소재지, 목적사업으로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 정관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함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 및 결과공개업무 위탁(안 제42조제4항·제5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 및 결과공개업무를 공공기관, 의료인 단체, 그 밖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음

89. 국민안전처위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4. 04. • 마감일자 : 2016. 04. 07.
-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서남해역 해양경비 안전 강화를 위하여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부안해양경비안전서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정원 2명(총경 1명, 경정 1명) 및 한시정원 4명(경정 3명, 5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합정운용·해상교통관제시스템운영·오염방제 등 해양경비안전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

한 인력 98명(7급 37명, 8급 19명, 9급 1명, 총경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9명, 경장 14명, 순경 12명)을 증원하며, 서해 북방한계선 해양경비 강화 등을 위하여 종전에 치안감으로 보하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조정하고, 재난관리실장이 지진·지진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지진방재과장의 분장사무에 지진·지진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04. 05. • 마감일자 : 2016. 05. 16.
-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과 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1)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규제 합리화 (안 제64조)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사적 이익을 편취하기 어려운 투자일임계약에 의한 매매 및 지수형 ELS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
 - (2)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 (안 제64조의2)
 -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고객에 대한 형사고발 수사기관 신고, 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 (3) 부동산펀드 최소투자비율 유예기간 연장 (안 제81조제4항)
 - 부동산펀드의 최소투자비율(50%) 적용 유예기간을 법률 개정함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 (4) 보수총액 상위 5명의 적용범위 (안 제168조의제2항)
- 보수공개 대상이 되는 보수총액 상위 5명의 적용범위를 기존 임원보수와 동일하게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함
- (5) 이익배당 관련 주총 보고사항 (안 제176조의14제1항)
-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한 경우 주총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i) 배당액의 산정근거 (ii) 배당성향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그 내역 및 이유 (iii)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
- (6) 공매도 잔고 보고에 관한 자료 보관의무 (안 제208조의2제2항)
- 전문투자자가 공매도 잔고 보고에 관한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을 5년으로 규정
- (7)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 조정 (안 제208조의2제5항)
- ※ ' 13.11월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에서 발표된 내용
-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0.01% 이상인 경우에도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에서 제외하여 소액투자자들의 보고부담을 경감
 - 아울러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순보유잔고 비율에 관계없이 보고대상에 포함
- (8)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안 제208조의3)
- 상장주식에 대하여 순보유잔고가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0.5%를 초과하는 경우 매도자에 관한 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 (9) 공매도 관련 기타 조문 정비사항 (안 제208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208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
-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공매도의 세부정의, 독립거래단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순보유 잔고의 산정 방법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개정
- (10) 해외증권 투자펀드의 기준가격 오차 허용 기준 완화 (안 제262조제1항)
-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의 기준가격 오차 허용 기준을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 수준으로 완화 (0.1%→0.3%)
- ※ 동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의 조문을 정비

하고, 일부 위임내용을 정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함께 예고

9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4. 05. • 마감일자 : 2016. 04. 26.
-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를 출입하는 경우 증표 및 관계서류 제시 의무와 관련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1.19.공포, 법률 제13802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는 서류에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

9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04. 05. • 마감일자 : 2016. 05. 16.
-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등 항만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2016.2.25)’에서 확정된 ‘항만보안 강화방안’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안사건’이 발생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해당 선박에 대한 항만 출입 허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보안사건이 발생한 선박에 대한 항만 출입 허가제 도입(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 1)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 등 보안사건과 관련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안사건’ 중 「출입국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한 승무원이 무단 상륙한 사건과 관계된 선박에 대해 항만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항만보안사고 예방이 기대됨

- 보안사건이 발생한 선박의 출입 허가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안 제3조제2항 신설)

9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4. 05. • 마감일자 : 2016. 05. 16.
-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을 위한 지역 및 금액 등 근거를 마련하고, 결핵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본인부담액을 면제하며, 제왕절개 분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70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 적용하기 위함
-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지역 및 금액 등 근거 마련 (안 제23조 제3항)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임신 출산 진료비를 추가 지원
- 결핵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본인부담액 면제 적용(10% → 0%) (안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가목3))
-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 확대 (안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70세 이상에 대하여 적용 되고 있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을 65세로 확대
- 제왕절개분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안 별표2 제3호아목)

제왕절개분만시 입원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본인부담률을 인하

9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4. 05. • 마감일자 : 2016. 05. 16.
- 70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70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95.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04. 05. • 마감일자 : 2016. 05. 16.
- 상표법 개정(법률 제14033호, 2016. 9. 1. 시행)에 따른 신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상표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1) 법정기간의 추가연장 규정 신설(안 제30조제4항)
상표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또는 심판의 청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 기간은 30일로 함
 - 2) 출원인의 자진보정 범위확대(안 제41조)
상표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표장에 관한 설명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입체상표 등의 제출도면 중 선명하지 아니한 도면의 수정 또는 교체 등이 가능하도록 함
 - 3) 심판절차중지신청을 위한 서식 마련(안 제82조)
심판의 당사자가 신청에 의해 본인의 심판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심판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해당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서식과 근거규정을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 개선
 - 1) 출원인의 지리적 표시 관련 서류제출 중복해소(안 제36조제5항)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특허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출원한 자의 제출서류 중 상품의 품질, 명성 등 중복되는 서류는 어느 부처에 관계없이 1회만 제출하도록 함
 - 2) 소리상표 관련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범위 확대 신설(안 제 100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소리상표를 출원함에 있어 소리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이 가능하도록 함
 - 3) 출원인 관련 명칭변경(안 제3조)
'출원인코드' 를 '특허고객번호' 로 용어를 변경함

96. 상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04. 05. • 마감일자 : 2016. 05. 16.
- 상표법 개정(법률 제14033호, 2016. 9. 1.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가지 조문을 독립된 조문으로 풀면서 전체 조문을 다시 배열하여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표장의 구성방식에 따른 유형 규정 신설(안 제2조)
상표법상 표장은 기호, 문자, 숫자, 도형, 도안,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연속된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또는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 상품의 포장이나 용기, 상품에 관한 광고 등의 특정 위치에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함
-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11조)
상표전문기관의 업무범위를 상표검색과 상품분류 외에도 상표의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 국제상표 등록출원에 관한 번역, 상표심사자료

의 정비·구축 등으로 확대함

○ 등록상표에 관한 게재사항 신설(안 제16조)

상표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상표가 등록된 경우 등록공고를 상표공보에 게재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등록된 상표의 권리자에 대한 정보 등 등록상표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고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신설함

9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6. 04. 05. • 마감일자 : 2016. 05. 16.

-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 인증 심사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인증 제도를 통합하고 농진청에 위임된 유기농업자재 업무를 친환경 인증업무 총괄기관인 농관원으로 통합하여 친환경 인증제도와 일관관리 및 친환경 인증 갱신의 편리성을 제고 및 이원화 된 인증심사기준을 통합하고자 시행규칙에 규정된 세부 규정을 고시로 전환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 임
- 인증제도와 허용물질(유기농업자재 포함)을 일관관리를 위해 행정권한을 농관원으로 위임
 - 허용물질 관리 및 농진청의 유기농업자재 위임사무를 농관원으로 변경(안 제5조제2항, 제3항)

9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6. 04. 05. • 마감일자 : 2016. 05. 16.

-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 인증 심사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인증 제도를 통합하고 농진청에 위임된 유기농업자재 업무를 친환경 인증업무 총괄기관인 농관원으로 통합하여 친환경 인증제도와 일관관리 및 친환경 인증 갱신의 편리

성을 제고 및 이원화 된 인증심사기준을 통합하고자 시행규칙에 규정된 세부 규정을 고시로 전환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 임

- 시행규칙 별표로 운영중인 허용물질 종류는 고시로 전환하고 허용물질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절차도 간소화
 - 시행규칙 별표 1(허용물질 종류)는 고시로 운영하고 허용물질 선정기준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하고 전문가 심의회도 간소화(기존 2차 → 개선 1차) (안 제3조제1항, 2항, 별표 1, 별표 2)
- 인증 및 공시등의 갱신시 첨부서류 간소화
 - 인증 및 공시의 갱신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갱신 신청시 첨부자료 중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안 제16조제1항, 제51조제1항)
-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를 농관원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규정마련
 - 유기농업 자재 및 공시등사업자에 대한 정기·수시·특별조사, 허용물질 사용여부, 유효 성분함량 등 조사사항을 규정(안 제 67조)
- 그동안 시행규칙과 고시(농관원)을 이원화되어 이용이 불편한 유기·무농약 인증기준을 일원화 및 인증기준 개정
 - 시행규칙은 인증 기본원칙, 중요사항, 규제내용 등으로 간략화 하고 고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도록 함(별표 3, 11)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농물용의약품 사용시 당초 휴약기간 2배에서 전환기간이상 경과시 인증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에서만 운영하는 무농약인증에 대해 농가 진입편리성을 제고하고자 의무 전환기간(1년)을 농가 자율로 변경(별표 11)

9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6. 04. 05. • 마감일자 : 2016. 05. 16.
- 시행규칙 별표로 운영중인 허용물질 종류는 고시로 전환하고 허용물질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절차도 간소화
 - 시행규칙 별표 1(허용물질 종류)는 고시로 운영하고 허용물질 선

정기준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하고 전문가 심의회도 간소화(기존 2차 → 개선 1차) (안 제3조제1항, 2항, 별표 1, 별표 2)

- 인증 및 공시등의 갱신시 첨부서류 간소화
 - 인증 및 공시의 갱신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갱신 신청시 첨부자료 중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안 제16조제1항, 제51조제1항)
-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를 농관원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규정마련
 - 유기농업 자재 및 공시등사업자에 대한 정기·수시·특별조사, 허용물질 사용여부, 유효 성분함량 등 조사사항을 규정(안 제 67조)
- 그동안 시행규칙과 고시(농관원)을 이원화되어 이용이 불편한 유기·무농약 인증기준을 일원화 및 인증기준 개정
 - 시행규칙은 인증 기본원칙, 중요사항, 규제내용 등으로 간략화 하고 고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도록 함(별표 3, 11)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농물용의약품 사용시 당초 휴약기간 2배에서 전환기간이상 경과시 인증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에서만 운영하는 무농약인증에 대해 농가 진입편리성을 제고하고자 의무 전환기간(1년)을 농가 자율로 변경(별표 11)

10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6. 04. 05. ● 마감일자 : 2016. 05. 16.
-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 인증 심사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이양,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인증 제도를 통합하고 농진청에 위임된 유기농업자재 업무를 친환경 인증업무 총괄기관인 농관원으로 통합하여 친환경 인증제도와 일관관리 및 친환경 인증 갱신의 편리성을 제고 및 이원화 된 인증심사기준을 통합하고자 시행규칙에 규정된 세부 규정을 고시로 전환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 임
- 인증관리의 공정·공평성 제고를 위해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의 공동사무인 인증심사 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단일화

- 유기식품 등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민간인증기관에 신청하도록 함
(안 제20조제1항, 제34조제3항)
- 유기농어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제도를 “공시” 제도로 통합 운영
 - 활용도가 낮은 품질인증 제도는 폐지하고 공시에 효능·효과를
자율표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 제37조제2항, 제42조)
 - * 효능·효과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벌칙 규정도 마련

10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4. 06. • 마감일자 : 2016. 05. 16.
-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공개 방법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등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
완하여 석면 피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04. 06. • 마감일자 : 2016. 05. 16.
- 외국인투자 신고 및 등록 등의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854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 및 등록 절차 등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 절차와 서식 간소화(안 제2조, 별표 1, 별
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 현행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삭
제, 별지 제4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까지 삭제)
 - 1) 신주취득, 기존주취득, 합병, 장기차관, 출연 등 투자형태별로 각
각 규정되었던 신고제도가 통합됨에 따라 각 유형에 따른 신고절차,
구비서류 등의 규정을 하나의 조문으로 간소화하고, 신고 및 변경신
고서 서식을 기존의 6종에서 3종으로 통합함
 - 2) 법률의 위임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변경신고
및 등록하는 사항인 외국인 투자비율 등의 목록을 규정함
- 기존의 유형별 민원사무 처리 신청 절차 및 신청 서식을 삭제하고

개별 법령의 절차 및 서식을 따르도록 함(안 제10조, 별표 2, 별지 제12호 서식, 현행 제11조부터 제15조의6까지, 별지 제13호 서식부터 제16호의6 서식까지 삭제)

-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절차 간소화(안 제17조 및 제17조의 2, 제19조, 별지 제17호 서식 및 제18호의2 서식, 현행 제18조 및 제20조, 별지 제19호 서식 및 제22호 서식 삭제)
 - 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신청 절차를 폐지하고 말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 통지 등 말소 절차를 규정함
 - 2) 자본재 처분신고, 주식등의 양도 및 감소 신고는 변경등록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삭제함
- 기술도입계약 관련 절차 및 서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2조, 별지 제23호 서식 삭제)

10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 예고일자 : 2016. 04. 06. • 마감일자 : 2016. 05. 16.
-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3854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외국인투자의 정의를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2조제6항 및 제7항)
 - 1) 외국인투자 정의(외국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의 예외사유 중 ‘제품 등 구매계약’ 또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외국인투자에서 제외함
 - 2) 비영리법인 출연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출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및 5천만원 이상을 출연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출연에 대한 요건 중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에 해당 할 것’으로 완화함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

를 4년 이상의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등으로 구체화 함(안 제3조)

10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04. 06. • 마감일자 : 2016. 05. 16.

○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1.27.공포, 7.28.시행)되어 사업정지 권한 위탁 신설, 이행강제금 도입, 금지행위에 중요사항 설명·고지 의무 신설 등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최근 결합판매 활성화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와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에 반영하는 한편, 간소화 또는 보완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가. 사업정지 권한(안 제45조의2·[별표 5의2] 신설, [별표 1]·[별표 9] 개정)

○ 사업정지 처분 기준은 3개월, 갈음과징금은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별로 매출액의 각 2/100·2/100·1/100로 정하고, 사업정지 처분 시 서면 고지 규정을 신설함

나. 이행강제금(안 제45조의3 신설)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 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금액(관련매출액)으로 정하고,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금지행위(안 [별표 4] 개정)

○ 개정법은 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그 유형 및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 지원금, 경품, 할부수수료, 보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개별 할인을 등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허위 과장 기만하는 광고를 금지함

- 현재는 서비스 ‘가입’ 과 ‘해지’ 단계에서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만 금지하고,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선택권 제한 관련 금지행위 유형도 제한적이므로,
 - 서비스 가입거부,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조건 변경, 불가피한 해지시 위약금 부과 금지 등 가입 이용 해지 단계별로 금지행위 유형을 세분화함
 - 명의도용 당한 이용자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결합판매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와 부당한 수수료 차별 제공 행위 등도 이용자차별 금지행위 유형으로 신설함
 -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부당한 제한을 부과하고, 소프트웨어의 설치 삭제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정보로 오인하게 하는 등의 이용자 선택권 제한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신설함
 - 현재는 비용 수익 부당 분류 등에 관한 범위가 전기통신서비스로 한정되어 있으며, ‘상호접속등’ 에서 불공정행위가 다른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금지행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비용·수익 부당 분류와 제3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 제공 등의 금지행위 범위에 기존 전기통신서비스 뿐만 아니라 결합판매서비스도 포함함
 - ‘상호접속등’ 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함
 -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수익배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배분도 금지하고, 수익배분 제한 유형에 ‘독점제공’ 등 비경제적 거래 조건도 포함함
 - 한편, 그간의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지거나, 불필요 또는 유사한 조문 내용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 시외전화 사업자 선택을 보장하는 사전선택제 관련 금지행위 조항, [별표4] 각 호의 고시제정 근거 조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이외에 다른 법률의 회계처리기준 준수 의무 등을 삭제함
- 라. 과징금(안 제47조제3항 신설, [별표 6] 개정)
- 자료제출 요청 규정, 필수적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을 고시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을 신설함

10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4. 06. • 마감일자 : 2016. 05. 16.
-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자격기준을 합리화 하고, 대학교 등에 설치하는 화학실험실에 적합한 위험물안전 기술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0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4. 06. • 마감일자 : 2016. 05. 16.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사고원인과 피해 등을 조사하면서 자문을 하기 위한 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0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4. 06. • 마감일자 : 2016. 05. 17.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규정 신설,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 폐지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024호, 2016. 2. 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 범위 및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 품질인증식품 표시가 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수거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인증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5)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10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4. 06. • 마감일자 : 2016. 05. 17.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범위 확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 폐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024호, 2016. 2. 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범위 확대(안 제6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외에 이미 지정받은 자에게도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함
-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업무의 위탁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제11조 삭제)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주체 확대(안 제22조, 제23조)
 - 1)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교육감과 협의하여 해당 연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2)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영양성분 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제24조 별표 2)
 - 1)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및 그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2)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및 그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10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 예고일자 : 2016. 04. 06. • 마감일자 : 2016. 05. 16.
- 벤처기업으로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성화하고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하한규제를 완화하고, 벤처투자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감안하여 벤처투자조합 접수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벤처캐피탈협회와 한국벤처투자(주)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기업이 결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단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주교부 방식으로 부여일 기준 행사차액이 1인당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함(안 제11조의3제3항)
- 벤처투자 관련 업무 위탁 기관에 한국벤처투자(주)를 추가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접수를 벤처캐피탈협회에, 벤처투자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의 업무를 한국벤처투자(주)에 신규로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제2항, 제3항)

11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04. 06. • 마감일자 : 2016. 05. 16.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직원에 대해 취하여야 하는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안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이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폭언·폭행 고객 등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관할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함

111.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4. 07. • 마감일자 : 2016. 05. 17.

- 외국인학교 운영의 탄력성 제고 및 본국 정부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교지·시설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 외에 본국 정부의 재산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일반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귀화자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이 허용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판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학교가 법을 위반하여 부정입학에 반복적으로 관여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외국인학교의 교지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본국 정부의 재산 임차 허용(안 제4조제2항 개정)
-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 반복적인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제15조 신설)

11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4. 07. • 마감일자 : 2016. 05. 17.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결정을 하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책 임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공포(2015.8.11, 법률 13462호)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자격정책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하려는 것임
- 자격정책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113.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4. 07. • 마감일자 : 2016. 05. 17.
- 민간자격 등록업무의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관부처에서 민간자격 등록 처리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소관기관의 장은 신청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록 후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된 민간자격분야가 다른 기관 소관사항이라 판단되면 지체 없이 그 해당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 등록신청을 받거나 이송 받은 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해당여부가 불명확하거나 2개 이상 부처의 소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소관기관 결정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23조제6항)
- 교육부장관이 소관 기관으로 결정한 기관의 장은 21일 이내에 등록 검토 후 등록 처리를 완료하도록 함(안 제23조제7항)

114.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4. 07. • 마감일자 : 2016. 05. 17.
- 민간자격 등록업무의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관부처에서 민간자격 등록 처리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민간자격 등록관리기관이 민간자격 등록 신청인에게 신청서 내용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10일 이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이 기간은 등록업무 처리 기간을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제5항)

11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4. 07. • 마감일자 : 2016. 05. 17.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조례 공포 절차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명칭 변경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14조 삭제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조례 공포절차 등 삭제 정비

11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4. 07. • 마감일자 : 2016. 05. 17.
-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13686호, 2015.12.29.)으로 자동차안전 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 또는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과징금액 상향, 위반행위 종류별 상한액 차등 설정 및 과징금 부과 시 가중·감경 기준 마련을 통해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발적 리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위반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액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용어 및 문구 수정(안 제15조제4항)
 - 나. 부과 과징금액 상향 및 능장리콜 기산일 기준 마련(안 별표1)
 - 다. 안전기준 위반사안별 과징금 상한액 마련(안 별표1)
 - 라. 과징금 부과 시 가중·감경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1)
 - 마. 시행시기 : 2016년 6월 30일(부칙)

117.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4. 07. • 마감일자 : 2016. 05. 17.
- 법률에서 특별건설승인의 절차(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한바,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14.8 시행)」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서식을 개정하고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 수집근거를 명문화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법률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토대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궤도건설심의회’ 설치 및 심의근거 마련(제15조의 2제1항 신설)
- 위원자격 및 임기 등 심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제15조의 2제2항내지제8항 신설)
- 궤도사업의 허가 승인 신고 등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신원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근거 마련(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항)
- 별지서식에 주민번호 수집이 불필요한 경우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고, 민원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118.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4. 07. • 마감일자 : 2016. 05. 17.
- 법률에서 궤도건설심의회위원회 설치 근거를 삭제한 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 조항 및 인용 조항을 삭제
- 위원임기 등 궤도건설심의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10조 삭제)
- 궤도건설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건설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제9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119. 「에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에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04. 07. • 마감일자 : 2016. 05. 1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일부개정)에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하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 기준을 이 법률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개정하고, 원격영상심판에 관한 사항

및 국민의 권리와 절차에 관한 사항 등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원격영상심판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제21조의5, 제21조의6)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원격영상심판장치의 요건과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게 한 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기준 일부 변경(안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미만인 사람인 경우” 로 변경함
- 면허취소 및 재결의 집행, 집행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등(안 제22조, 제22조의 2)
 - 1) 수석조사관은 해양안전심판의 결과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의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게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알리도록 함. 단 해기사가 승선 등의 이유로 기한 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심판원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면허증 제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2) 지방심판원의 재결이 확정된 이후 담당 조사관 및 해양사고 관련자 전원이 제2심 청구의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제2심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규정함
-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에 대한 서식 등 신설(안 제19조의2,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
법 제37조제3항에서 규정한 조사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제2심 청구서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에 대한 서식 등을 반영함

12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4. 07. • 마감일자 : 2016. 05. 18.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

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90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요건, 지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자격요건 마련(안 제20조 및 안 별표4의2 신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요건을 정함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를 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1)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신청인의 자격요건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정절차를 정함

3)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

12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4. 07. • 마감일자 : 2016. 05. 18.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을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권한의 위임(안 제22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관련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 위임하도록 정함

12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4. 07. • 마감일자 : 2016. 05. 18.
-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한 평가서의 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 사전공사 시행금지의 예외적용을 위해 사전공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통보로 변경하여 협의절차 개선
-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부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기술인력 부족에 따른 평가서 부실작성 예방 등

1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4. 07. • 마감일자 : 2016. 05. 18.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합리적 조정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포함된 사업은 약식절차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며,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등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협회 위원구성의 전문성 강화(안 제4조)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춘 자의 참여를 위해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포함
-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조정(안 제64조)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포함된 사업은 약식절차 대상사업에서 제외
- 평가대상계획(사업)의 합리적 조정(안 별표2·3)
1) 협의시기가 동일한 계획을 대규모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어항시설기본계획, 체육시설 사업계획,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계획을 전략환경영향

평가 대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중 실행적 성격의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
- 3) 군사기지 밖으로 이전·설치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과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사각지대 해소
- 4) 광물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를 광구면적(채굴계획 인가면적)이 아닌 실제 채광을 추진하는 면적(산지훼손면적)으로 개선
-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발전기)도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평가규모를 3만KW로 규정
- 6) 도립·군립공원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적용기준은 사업계획(공원구역) 면적이 아닌 공원시설계획 면적으로 합리화
- 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에 조성되는 산림복지시설별 산지전용(허가·신고) 면적의 합이 20만㎡ 이상인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추가

12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4. 07. • 마감일자 : 2016. 05. 18.
-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의와 분류체계를 명확히 하고, 환경영향평가업무의 대행을 받은 자가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평가서 부실 작성을 예방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의 명확화(안 제2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제도이나, 최상위 계획만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따라 당초 제도 도입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상계획을 상위계획에서 계획으로 수정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주체 수정(안 제8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환경부장관, 계획수립기관의 장, 승인기관의 장 모두 구성하는 것으로 입법화되어 있어 이를 개선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절차 간소화 및 실효성 제고(안 제24조제6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평가항목 등의 결정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이 서로 중복되지 않아 생략이 안되는 등 규정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개선
- 사전공사 시행금지 예외조항 정비(안 제34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안전펜스 설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사전공사 시행금지 예외적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제도 도입(안 제49조의2 신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고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신규로 협의를 받도록 하거나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시설의 입지로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행정기관간 혼선을 방지하고자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 저가하도급 예방(안 제56조·제74조)
환경영향평가업무의 대행을 받은 자가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평가서 부실작성 예방

125.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인)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4. 07. • 마감일자 : 2016. 05. 17.
- 소방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집중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안전교부세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헬기 등 특수수요에 대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기타 소방안전교부세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시도의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 제출기한을 8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안 제6조 개정)
-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변경(안 별표 2 개정)
 - 1) 시도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이외에 사용시 다음다음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에서 그 금액만큼 감액
 - 2) 특수수요에 대한 소요 금액을 교부기준에 신규로 반영
 - 3) 교부기준 중 노후 소방장비 교체 소요 금액과 부족 소방장비 보강 소요 금액을 통합
 - 4) 중점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중점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3배에서 5배로 확대
 - 5) 교부기준 중 안전지수 비율을 안전지수 소요비율로 변경하고 안전지수 투자비율을 신규로 반영
 - 6) 교부기준에 안전신고 처리비율을 신규로 반영

126.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4. 07. • 마감일자 : 2016. 05. 17.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 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25호, 2016. 1.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세종특별자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용어 정리 등(안 제4조 및 제5조)

127.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4. 07. • 마감일자 : 2016. 05. 17.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25호, 2016. 1.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임
- 저수지·댐의 합동안전점검 및 정보체계구축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안 제8조 및 제25조)
- 「세종특별자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용어 정리(안 제9조 및 제12조)

128.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6. 04. 07. • 마감일자 : 2016. 04. 14.

-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만인의총관리소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학생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과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 유물 전시 및 자료 연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국립무형유산원에 무형문화재 정책의 집행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고,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안재방재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경주 월성 발굴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연구사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소수점 정원 도입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운영 규정을 새로이 정비하고,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 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민원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종전에 운영지원과장이 분장하던 민원사무를 법무감사담당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48호, 2015. 3. 27. 공포, 2016. 3. 28. 시행)됨에 따라 무형문화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의 신설 등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와 국립무형유산원간 분장 사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129.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 예고일자 : 2016. 04. 07. • 마감일자 : 2016. 05. 17.
- 현재 입법예고 제도는 관보 및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고, 관보에는 입법예고되는 법령안의 개략적인 내용만 제공되고 있는바, 일반 국민 입장에서 입법예고된 법령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법령안 입법예고를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제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영향분석서와 입법배경에 관한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등)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공하는 한편, 그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의견제출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공하고, 의견제출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의 의무적 실시
 - 1) 현재 입법예고의 실시는 관보를 필수적인 수단, 각 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보조적·선택적 수단으로 하고 있어, 일반국민 입장에서 서로 다른 부처의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2)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부 부처의 입법예고 내용을 단일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고, 시스템을 통한 국민의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의 실시를 의무화함

3)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방문할 필요 없이 통합입법 예고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입법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절차가 간소화·효율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공시제도 도입(안 제18조제3항 신설)

1)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개별통지 제도와 병행하여 제출의견과 처리 결과 및 그 이유를 법령안 심사 요청을 하기 전에 공시하도록 하여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과 그 결과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2)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공시제도 도입을 통하여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정부의 검토 및 처리 과정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입법과정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법제업무 평가제도 도입(현행 제19조제1항 삭제, 안 제28조제2항·제3항 신설)

1)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입법예고 제도의 운영, 하위법령 제때마련, 정부입법계획의 시행 등 법제업무 전반에 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각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업무 평가제도를 도입함.

2) 법제업무 평가제도를 통하여 법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입법과정을 효율화하는 한편, 정부정책의 법제화 과정을 뒷받침함으로써 정부업무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